

「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인 「지방세기본법」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이 상향 개정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반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서류의 송달방법 기준금액 변경(안 제5조)
 - “30만원”을 “45만원”으로 변경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0조, 제55조
- 합 의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상위 법령인 「지방세기본법」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면제되는
기준금액이 상향 개정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
송달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현행	개정안
제5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법 제 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.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,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<u>30만원</u>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	제5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----- ----- ----- -- . ----- ----- ----- -- <u>45만원</u> ----- -----.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
- 개정안 제5조는 서류의 송달방법 기준금액 변경을 위한 것으로,
2023년 12월 상위법인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 제4항의 개정예에 따라
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변경되었음.
이에 따라 우리시 우편송달 방법을 정비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이
일반우편 송달 가능한 금액 기준을 1매당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
미만으로 변경하여 상위법 개정의 목적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

적합한 것으로 판단됨.

- 또한, 우편 발송비용은 1매당 일반우편 430원, 등기우편 2,530원으로 송달방법 기준금액 변경 시 등기우편 대상 건수가 약 17,668건 감소하여 소요 예산이 38백만원 정도 절약될 것으로 예상됨.

<관련법령>

□ 지방세기본법

[시행 2024. 1. 1.] [법률 제19859호, 2023. 12. 29., 일부개정]

제55조(납부지연가산세) ① 납세의무자(연대납세의무자,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(이하 “과소납부”라 한다)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(이하 “초과환급”이라 한다)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.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, 과소납부분(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(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,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(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)을 초과할 수 없다.

1. ~ 3. 생략

4.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

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(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, 가산세는 제외한다.) ×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

② · ③ 생략

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 ·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⑤ 생략

※ 별표 (참고자료)

○ 우편 발송 건수 (23년 정기분 기준)

구 분	우편 발송 건수 (단위:건)			
	현행기준 (30만원)		개정안기준 (45만원)	
	일반	등기	일반	등기
합 계	493,360	38,394	511,028	20,726 (△17,668)
자동차세	230,664	11,017	240,312	1,369 (△9,648)
재산세	262,696	27,377	270,716	19,357 (△8,020)

※ 변경 시 등기 건수 17,668건 감소

○ 우편 발송 비용 (23년 정기분 기준)

구 분	우편 발송 비용 (단위:백만원)	
	현행기준 (30만원)	개정안기준 (45만원)
합 계	308백만원	270백만원 (△38백만원)
자동차세	126백만원	106백만원 (△20백만원)
재산세	182백만원	164백만원 (△18백만원)

※ 우편 발송 비용: 일반(430원), 등기(2,530원)